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군
건명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가능 및 보조금 회수 필요 여부		

1. 개요

【 보조사업 현황 】

- ◇ 사업명 : 0000년 000 유통·가공·보관시설 지원사업
- ◇ 위치 : 00군 00면 00리 00
- ◇ 사업자 : 000000000
- ◇ 사업비 : 5억원(군비 4, 자부담 1)
- ◇ 시설규모 : 창고 1동 660㎡ ※ 사후관리 기간 : 2029. 5. 30.
- ◇ 사업목적 : 00 00 전용 보관창고 신축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업인 편의 기여

2. 신청 사유

- ◇ 0000년 000 유통·가공·보관시설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창고를 00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매입하는 경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가능 및 보조금 회수 필요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0000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농업용 창고가 보조사업 목적의 000 유통·가공·보관시설로 활용도가 떨어져 000000 보관창고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였으나,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지정받지 못함.
 - 0000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창고를 처분하고, 000000 보관창고 입지가 가능한 00면 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창고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 ※ 「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000000 관련 시설은 0000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000000을 가공·보관하는 시설임.
 - 00군에서는 0000 소유의 창고를 매입하여 00면 일원의 주민들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함.
 - ※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해 2023년 2월 00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였고, 창고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576,225천원이 산출되어 보조사업비 500,000천원 대비 76,225천원의 가치가 상승된 것으로 확인됨.

3. 관련 법령 확인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4. 검토 결과 및 의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가능 및 보조금 회수 필요 여부**
: 처분 가능, 보조금 회수 필요

－ 보조사업자가 00군수로부터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받으면 양도 가능, 다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 행위를 승인**해야 할 것임.

－ 또한, 보조사업자의 **처분 승인 요청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처분 승인 요청 기간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 승인 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보조금 회수 금액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별표 5의 나. 보조금 환수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 「00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되나,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 **중요재산 사후관리 대상 확인** :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 사후관리 대상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준공일	사후관리 기간 경과 예정일	비고
건축물 (농산물 유통·가공·보관시설)	준공일부터 10년	2019. 5. 30.	2029. 5. 30. (잔여 기간 : 81개월)	

– **법제처 보조금법 해석 사례 확인**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후 처분 가능

질의 요지	해석 요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에서 양도·대여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한 재산을 그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목적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금법」 제35조 입법 취지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 자의(恣意)로 양도·교환·대여 등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중요재산 처분 자체를 금지하거나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판단을 처분자 자신에게 맡기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으면 해당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조사업 완료 후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보조사업 완료 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 중요재산의 처분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음.

5. 참고 자료(관련 법령 및 조례 발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3.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생략)

00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1.06.09 조례 제2777호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생략)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